

이사회 운영 규정

'20. 3월 개정

1. 목 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구 성

이사회는 등재이사 전원 (사외이사, 기타비상근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운영의 기본방침을 의결한다.

4.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5. 의 장

5.1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5.2 이사회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소집권자

6.1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2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회 의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7. 종 류

7.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7.2 정기이사회는 2월, 3월, 8월, 12월에 소집한다.

7.3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8. 소집절차

이사회 소집은 그 소집목적에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회의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겐 전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동의할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9. 결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9.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9.1.1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 9.1.2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9.1.3 영업보고서의 승인
 - 9.1.4 재무제표 등의 승인
 - 9.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 9.2 정관 및 주요 규정에 관한 사항
 - 9.2.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2.2 이사회 규정에 관한 사항
- 9.3 경영에 관한 사항
 - 9.3.1 경영의 기본방침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9.3.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9.3.3 대규모 신규사업의 추진
 - 9.3.4 중요한 자산 및 영업의 양수도 (연결자산규모 10분의1 이상)
 - 9.3.5 회사의 합병/분할
- 9.4 재무에 관한 사항
 - 9.4.1 자금조달(사채의 발행)
 - 9.4.2 자기주식 취득/처분
 - 9.4.3 주식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
- 9.5 이사에 관한 사항
 - 9.5.1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9.5.2 이사회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 9.5.3 이사와 이 회사간의 거래승인에 관한 사항
 - 9.5.4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9.5.5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단, 감사위원 제외
- 9.6 기 타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별히 부의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0.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11. 결의방법

- 11.1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11.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11.3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동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11.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의사록

- 12.1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이사의 요령과 그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 12.2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제기한 자는 그 뜻을 의사록에 기재할 수 있다.

13. 주무팀

- 13.1 이사회의 주무팀은 기획팀으로 한다.
- 13.2 주무팀장은 이사회의 준비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문서관리규정에 의거 의사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80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0년 3월 2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3.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